

96 b

고 발 장

고 발 인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사무처장 박 원 순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404 기원빌딩 4층(Tel : 02-796-8364)

피고발인 1. 전 서 병

2. 정 응 섭

3. 김 순 호

죄 명 : 사 기

고발인은 시민운동단체인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의 사무처장으로서, 직무수행 중 피고발인들의 위법사실(국고금사기)을 인지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발합니다.

1. 피고발인들의 인적사항

피고발인 전서병은 용진군축산업협동조합("용진축협")의 조합장, 동 정응섭은 인천축협의 상무, 동 김순호는 김포축협의 직원으로 재직중인 자들입니다.

2. 고발사실

가. 피고발인들은 고발의 임기만(당시 해병6여단 보급참모), 김성열(동 보급대 선입하사)등과 공모하여 1990.1.1.부터 같은해 6.2.까지 사이에 용지축협이 해병6여단(9258부대)에 군부식으로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우정육, 돈정육, 계육, 쇠고기햄, 우유등을 실제로는 적게 공급하였음에도 납품서(검수증)등 관계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실제보다 많이 납품·공급한양 꾸미고 이와 같은 허위서류를 근거로 해군본부로부터 전액 국고지급을 받아 실제 납품액과의 차액을 편취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편취한 국고금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범죄 일자	품 명	수량(kg)	편취금액(원)	비 고
1990. 7. 9.	우 정 육	1,106	4,932,760	김원리명의
1990. 6. 2.	우 정 육	2,290	10,213,400	"
1990. 4. 6.	돈 정 육	2,984	8,966,920	"
1990. 5. 9.	돈 정 육	1,069	3,212,345	"
1990. 5.10.	돈 정 육	500	1,502,500	"
1990. 6. 2.	돈 정 육	1,563	4,696,815	"
1990. 5. 9.	계 육	758	1,379,560	"
1990. 6. 2.	계 육	1,793	3,263,260	"
	소 계		38,167,560	

범죄 일자	품 명	수량(kg)	편취금액(원)	비 고
1990. 4. 6.	우 정 육	1,000	4,460,000	김광춘명의
1990. 4. 6.	계 육	2,168	3,945,760	"
1990. 5.10.	계 육	1,153	2,098,460	"
		소 계	10,504,220	

범죄 일자	품 명	수량(kg)	편취금액(원)	비 고
1990. 5. 9.	쇠고기햄	미 상	미 상	임상호명의
1990. 5.22.	쇠고기햄	미 상	미 상	"
1990. 6. 2.	쇠고기햄	미 상	미 상	"
		소 계	15,750,000*	

※ 쇠고기햄의 실제 납품량은 총 4,970개(단가 1,260원)이나 서류상 위 범죄 일자에 공급한 납품량은 도합 17,470개로서 그 차이 12,500개(시가 금 15,750,0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임.

범죄 일자	품 명	수량(kg)	편취금액(원)	비 고
1990. 4.25.	우 유	100,000	13,700,000	박정웅명의
1990. 5.17.	우 유	120,000	16,440,000	"
		소 계	30,140,000	

총 편취금액 : 금 94,561,780원 (38,167,560 + 10,504,220 + 15,750,000 + 30,140,000)

나. 피고발인 전서병, 동 정웅섭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수법으로 국고금을 편취한 후 1990.7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사이에 군납계약상의 공급단가가 소급적으로 인상조정되어 해군본부로부터 전항기간(1990.1.1. ~ 동년 5.31.) 중 총공급가액에 대

한 인상차액 총액 금4,090,497원을 수령하여 가라는 통보를 받았는 바, 전항의 비위사실이 이미 고발의 김필우(당시 용진축협 백령지소장)에 의하여 적발되어 그로부터 시정을 요구받고 있었으나 그 비위 사실이 공개될 것을 우려하여 위 김필우의 시정요구를 묵살하고 전항의 총공급액중 편취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인상차액 금426,284원을 수령하여 동 금액을 편취하였음.

(1) 인상차액 총수령액

우정육	16,692 x 20 =	333,840
돈정육	21,887 x 15 =	328,305
계 육	27,511 x 42 =	1,155,462
계 란	454,578 x 5 =	2,272,890
합	계	금4,090,497원

(2) 실제납품액에 대한 인상차액

우정육	12,296 x 20 =	245,920
돈정육	15,371 x 15 =	236,565
계 육	21,639 x 42 =	908,838
계 란	454,578 x 5 =	2,272,890
합	계	금3,664,213원

(3) 편취한 인상차액

우정육	4,396 x 20 =	87,920
돈정육	6,116 x 15 =	91,740
계 육	5,872 x 42 =	246,624
합	계	금426,284원

3. 증 거

가. 서 증

- (i) 판 매 품 원 장 : 용진축협이 직접계통출하 납품한 물품의 공급내역을 기재한 서류
- (ii) 수탁판매가수금원장 : 용진축협이 조합원들의 위탁을 받아 납품한 물품의 공급내역을 기재한 서류
- (iii) 판매미수금원장 : 위 (i), (ii)서류의 납품내역을 종합 기재한 서류
- (iv) 납 품 서 : 1989.12.31.부터 1990.6.1.까지 사이에 작성된 납품서 (이중 허위납품서가 포함됨)
- (v) 지 급 결 의 서 : 용진축협이 판매위탁한 조합원에게 지급한 금액의 지급결의서(이중 허위납품부분 포함됨)
- (vi) 사무인수인계서 : 1989.5.26. 신임 백령지소장 김필우와 전임 소장 박신범 간에 작성된 서류(이에 첨부된 합계잔액시산표상 1989년도 전반기 약 6개월간의 6여단 부식공급금액이 나와 있음. 위 범죄가 행하여 졌던 다음해 1990년도 공급금액의 절반도 안됨)
- (vii) 탄원서 및 첨부자료 : 김필우가 작성하여 대통령에 발송한 탄원서 및 첨부 자료(사건 경위가 잘 나와 있음)
- (viii) 임기만(당시 9258부대 보급참모중령), 김성열(동부대 보급대 선임하사)에 대한 군법회의 재판기록 ; 단 이 재판기록에는 범죄사실이 축소되어 있음.

나. 증 인

김 필 우 : 범죄당시 용진축협 백령지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범죄사실을 발견
해내고 피고발인들에게 시정을 요구한 자

1996. 6.

고발인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사무처장 박 원 순

인천지방검찰청

귀중